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1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이해식 · 이인영

이연희 · 강훈식 · 조승래

한준호 · 김한규 · 허 영

노종면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)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,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조정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그런데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사건에 비추어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·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3 3조제2항 신설).
- 나.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,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이상 포함하도록 하고,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(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).
- 다.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(안 제35조제2항 신설).
- 라.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정하되, 조정 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,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,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).
- 마.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3조(분쟁조정기구) ①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각 호의 기관(이하 "조정대상기관"이라 한다), 금융소비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
- 2. 조정위원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한 규칙의 제정・개정 및 폐지
- 3.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

제34조제1항 중 "금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는"을 "조정위원회는"으로, "구성한다"를 "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 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"를 "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4

항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조정위원회의 위원 중"을 "위원 중"으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"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·위촉해제)"를 "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·위촉해제 및 신분보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"를 "조정위원회 위원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조정위원회는"을 "조정위원회 회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회의마다 정한다. 이 경우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,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하며, 그 외 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선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의견진술기회의 부여)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

-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조정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 원회의 구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1년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3조(분쟁조정기구) 「금융위원 제33조(분쟁조정기구) ① 「금융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_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제38조 각 호의 기관(이하 "조 률」 제38조 각 호의 기관(이 정대상기관"이라 한다), 금융소 하 "조정대상기관"이라 한다), 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 계인 사이에 발생한 금융 관련 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 ·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 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 1.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2. 조정위원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.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34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제 제34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--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 -----조정위원회는----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 -----성별을 고려하여

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 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 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 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
- 1. ~ 6. (생략)
-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.
- ⑤ (생략)
-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철회 · 위촉해제) (생략)

<신 설>

<u>구성한다</u> .
② (현행과 같음)
③
-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
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, 제2호
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
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1. ~ 6. (현행과 같음)
4
<u>3년</u>
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 중
<u>.</u>

제35조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35조(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· 위촉해제 및 신분보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유)

>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

제37조(조정위원회의 회의) ① 조 제37조(조정위원회의 회의) ① --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 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 로 구성하며, 회의는 조정위원 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임기	만료	전에	コ	의사에	반
하여	해촉되	티지 여	아니히	한다.	

-----조정위원회 위원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-----

-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-----
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임 은 회의마다 정한다. 이 경우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 한 조정위원,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 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 함되어야 하며, 그 외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선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2(의견진술기회의 부여)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사

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